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이유의 말미에 적절하게 이를 표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판결의 선고

##### 가. 선고기일의 지정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나(소액법 11조의2 제1항), 그 밖의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와 판결서 작성을 위하여, 변론종결 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의 기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원은 변론을 연 경우는 물론이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이어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민소 207조 1항). 또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민소 199조). 그러나 이들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선고기일은 변론을 종결하는 기일에 재판장이 지정한다.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방식(민소 257조 3항)과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기일을 정·통지한다. 또한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거나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전산양식 A1603)를 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재민 98-10).

원  
5)  
0-1  
남수  
같은 방식)  
  
하라. ←20mm→  
.....  
①  
②  
③  
  
것임